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효율적 시행방안

오 영 근*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속하게 설립된 것은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율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을 하도록 육성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단순히 검찰의 외곽조직에 머무른다면 모처럼 일었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열기가 용두사미식으로 식어버릴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활동은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가가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의지를 예산확보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책정된 경상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벌과금, 몰수금, 추징금의 일정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배정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들을 발굴해내고, 교육하고, 일정한 순서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서론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제30조)와 공판정에서의 범죄피해자진술권(제27조 제5항)이 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¹⁾ 이에 따라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진술권을 규정한 제294조의2가 신설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²⁾

이후 1990년 피해자 및 증인보호를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994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997년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률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법무 혹은 검찰개혁과제의 하나로 범죄피해자보호를 내세우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9월 김천과 구미지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초까지 전국 검찰청 및 지청 산하에 55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경찰에서도 2004년 6월 경찰청수사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각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정부에서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8월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률안이 2005년 12월 23일 국회

1)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학문적 관심은 1966년대 권문택교수가 “형의 양정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고시계, 1996년 4월호(통권 제110호)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1981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배상명령이 도입된 것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를 통과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성립하였고, 동법률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아울러 2005년 12월에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배상명령의 범위를 넓히도록 범죄피해자구조법³⁾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⁴⁾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해 2006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2006년 12월 4일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을 결정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좀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9월 범죄피해자보호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였다. 동위원회는 2007년 7월까지 7차례 회의 및 1회의 토론회를 거쳐 2007년 8월이나 9월 중 법무부장관에게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표명을 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기 위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어떤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기본계획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3)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구조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요건을 삭제하고(제3조), ②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제5조제1항 및 제3항), ③ 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제12조제2항) 등이다.

4)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하고(제25조제1항), ②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제도를 도입하고(제36조제1항 및 제5항), ③ 화해의 절차, 집행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제36조제2항 및 제3항, 제37조, 제39조) 등이다.

II.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기본계획 개관

1. 범죄피해자보호법

가. 목적 및 기본이념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총칙,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시책,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 등,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벌칙 등 총 5개 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범죄피해자보호법은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③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는 것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나. 주요내용

1) 범죄피해자의 정의

범죄피해자란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직접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②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제3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1. 범죄피해자의 보

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제5조).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시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는 첫째, 피해회복의 지원 등, 둘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여 보장, 셋째,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 넷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훈련, 다섯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홍보 및 조사연구, 여섯째, 범죄피해자주간의 지정 등이 있다.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제12조 - 제15조)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방향, 2. 범죄피해자 구조 범위,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기타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5) 범죄피해자지원법인(제16조 - 제20조)

범죄피해자지원단체를 법인형태로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및 조세감면의 혜택 등을 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가.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법무부는 2006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8월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시안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수렴과 정부 각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에 대해 범죄피해자실무위원회⁵⁾의 심의 및 2006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이 주재한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심의과정에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고, 2006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결정하였다.⁶⁾

나.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은 제1장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추진경과, 제3장 국가 등의 책무 및 추진과제, 제4장 정책과제별 구체적 시책, 제5장 추진체계 및 연도별 시행계획, 부록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4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4장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의 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홍보,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손실복구지원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대한

5)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기본계획의 성립과정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김경석,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참고.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 등도 함께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로 인한 손실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범죄피해 상담체계 구축,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민간 자원봉사활동 지원, 의료·보건서비스의 제공, 법률구조지원, 고용의 안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

2) 형사절차에의 참여보장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만, 현행의 형사절차에서는 당사자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신문이나 조사의 객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아가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명목하에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나아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형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으로는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진술권의 강화,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의 연락체계 형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가해자 석방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등의 방안 등이 있다.

형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가해자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 있다. 전자에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의 발간·배포,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공판기록의 열람·복사의 범위확대, 피해자에게 공소장 교부, 수사관련 사항·공판진행사항·형집행상황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정보의 제공, 불기소사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의 제공 등의 방안 등이 있다. 후자에는 가해자의 가출소 일자·석방예정일자·석방후의 주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가해자의 수용지·가해자의 처우에 관한 정보 등 형사재판 종료 후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관서에 피해자지원전임담당자 배치, 가해자의 보호관찰처분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방안이 있다.

3)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범죄피해자들은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가해자에 의한 보복이나 협박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피해자 신변의 안전보장 대책과 피해자의 정보보호 대책이 있다.

첫째, 피해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의 운용, 피해 직후의 피해자 일시 보호시설 및 가해자가 체포되기 전까지 재위해 방지를 위한 보호소의 설치, 참고인 내지 증인 신문과정에서의 보호 및 2차적 피해 방지, 가해자로부터 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재피해방지대상자’로 지정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및 증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석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재피해방지 조치, 아동학대의 방지·조기발견·조기대응을 위한 체제정비 등이 있다.

둘째, 피해자의 정보보호 대책으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명·주소의 원칙적 비공개,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등의 가명 사용, 기소장 낭독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명을 낭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등과 같은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 보호 대책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범죄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 마련 등이 있다.

4)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홍보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범죄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상황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지식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몽활동의 전개 등이 필요하다.

첫째,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실시 방안에는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계하는 인재의 양성 및 자질향상,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동·여성 피해자 등의 배려에 관한 연수,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자립 등 관계자의 연수, 민간단체의 연수에 대한 교육 지원, 학교교육을 통한 이해 증진 등의 방안이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에는 범죄피해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문가의 양

성 등과 같은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 방법 연구(법무부 인권국,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셋째, 홍보 및 계몽활동에는 범죄피해자 등이 처해있는 상황,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에의 배려의 중요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범죄피해자 주간”설정을 추진하고, 범죄피해자 주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범죄피해자 등의 인권문제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위한 강연회, 연수 등 실시하는 것과 같이 범죄피해자 등 시책에 관계되는 특정기간에 있어서 대국민홍보·계몽사업의 전개 등이 있다.

5)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 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임무이지만, 국가의 인적·물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모든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민간재원을 이용한 기금 마련 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체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감독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 홍보 및 교육지원, 자금지원, 각 지역에서 범죄피해자 등 지원에 관계되는 기관·단체 등 연계·협력 등 네트워크지원 등이 있고, 이들 단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감독, 관련부처 및 시민단체의 의견반영 등의 방안이 있다.

둘째, 재원의 조달·운용방안에는 국가의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보조금 지급, 자체조달, 사회공공단체로부터 기부금 확보, 복권기금, 벌과금에 의한 범죄피해자 기금확보 등의 방안이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운영을 재검토하여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 추진체계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2) 연도별 시행상황의 점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 성과를 평가한다.

III.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효율적 시행방안

1.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초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위원회의 범죄피해자보호 TF팀의 검토결과에 따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잘 나타나 있다.⁷⁾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표명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7)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2007.7.30. 범죄피해자보호 TFT의 최종회의에 제출된 의견표명 초안을 중심으로 한다.

첫째, 기본계획의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타 부처 및 각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신중검토’ 또는 ‘장기검토’, ‘검토추진’, ‘연구검토’ 등으로 적시되어 있어 실효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단계적·일정별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피해자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사건 초기단계에서 신속한 피해자지원을 위한 ONE-STOP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3)지속적인 치료지원과 상담, 나아가 교육 및 취업의 알선 등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4)지방자치단체는 통합적 피해자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발굴,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5)피해실태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고, (6)장단기 지원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당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관련예산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와 관련하여, (1)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권을 보장하고 비디오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를 위한 비공개재판제도를 운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화하고, (2)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피해자 정보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강화하고, 공판정출석권 및 소송기록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3)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피의자·피고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단체의 활발한 피해자지원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금지급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은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은 필요최소한의 수준에만 그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나 인권취약계층이 겪는 범죄피해는 보다 일반인의 범죄피해보다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이들이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차별문제에 유의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정책추진 목표의 하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실현가능한 과제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또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일정에 따라 이 계획을 실천해나가면 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 효율적 시행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계획이 합리적·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거나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는 과제들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이 과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좀더 실효성있고 구체적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나, 인권취약계층의 특별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피해자보호법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역시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기본계획에 이미 들어있는 것들이 많고, 공판정 진술권의 원칙적 허용, 의무적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2007. 6. 1.의 개정형사소송법에서 비로소 도입하거나 강화한 제도들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다소 중복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순위를 정해 현실성있는 과제들을 선택하고 그에 집중하는 소위 '선택과 집중'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찬의 가지수가 많지만 먹을 게 없는 밥상보다는 가지 수가 적더라도 맛있는 반찬으로 차려진 밥상이 더 낫듯이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수많은 과제 중 실현가능한

과제들을 선택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과제들로는 우선 재정적 부담이나 국가기관의 인적·물적 부담이 거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제의 예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활성화와 민간단체간의 네트워크 강화, 회복적 사법의 도입,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재정부담이나 국가기관의 인적·물적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과제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제의 예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상향조정,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3.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성화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1)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3년 9월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된 이래 약 2년 6개월 동안 전국 검찰청 및 지정 산하에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신속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특유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검찰의 주도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검찰의 주도하에 신속하게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진정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치성과 자립성을 상실하고 검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바야흐로 전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2) 활성화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자율성과 자립성의 확보, 둘째, 재원의 확보, 셋째,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의 확보, 넷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보, 다섯째, 다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방안의 확보 등이라고 할 수 있다.⁸⁾

① 자율성 및 자립성 확보

검찰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운영에도 여러 가지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검찰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초창기 검찰의 후견적 역할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하고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명실공히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의 자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범죄수사에서 초동수사가 중요하듯이 범죄피해자지원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에서의 지원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초기단계의 지원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⁹⁾ 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후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업무의 중복이나 단체간의 불협화음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각각 범죄피해자지원단체를 두기 보다는 현재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법원 나아가 교정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재원의 확보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원의 출처를 보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약 50%, 임원기부금이 약 40%인 반면 일반주민들의 후원금은 1-2%에 불과하다.¹⁰⁾ 이것은 범죄피해

8) 같은 견해로, 김지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9-281면; 최영승,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197면 이하; 윤상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251면 이하.

9) 범죄피해자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와 경찰의 협조에 대한 것으로, 도미타 노부호/강경래(역), “민간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 일본에 있어서 경찰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427면 이하; 강경래, “민간 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407면 이하.

지원센터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독립적인 민간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주민의 기부금이나 회원의 회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40%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 임원들의 기부금이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소수 임원들의 관심이나 충성도 여하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안정적 범죄피해자보호활동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의 확보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근으로 활동하는 직원은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이고 이들도 대부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¹¹⁾ 이와 같이 소수의 전문화되지 않은 인력과 시설 및 설비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고 할 경우 이를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한 명의 피해자에게 집중하여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피해자에게 나누어 지원할 것인가, 전반기와 후반기에 균분하여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시급한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 한꺼번에 지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로부터 상담요청을 받았을 경우 상담을 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경우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유관단체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보

2005년도의 경우 절반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활동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어느 지원센터나 상근직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보

10) 자세한 사항은, 김지선, 앞의 책, 184면 이하.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위의 책, 147면 이하 참조.

12) 위의 책, 247면.

호 및 지원활동이 단순한 호의나 선한 동기로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응급처치요령을 모르는 사람이 응급환자를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의 내용, 범죄피해자의 상황, 성격, 환경 등을 이해하여야 하고, 상담기법을 습득해야 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통일적 매뉴얼의 개발도 필요하다.

⑤ 다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방안의 확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각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학교폭력상담소와 같이 여러 민간단체들이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피해자들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직접 지원활동을 벌이기 보다는 범죄피해자들을 이러한 단체들에게 연결해주는 것이 범죄피해자들로 하여금 좀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이나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병원, 소방서, 변호사단체, 법무사단체 등과의 연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피해자지원단체들이 One-Stop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4. 회복적 사법의 도입

종래의 형사사법은 판사, 검사, 경찰, 교도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범죄자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회복적 사법이란 -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 범죄자와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 내지 재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형사사법 하에서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의 객체에 불과하지만, 회복적 사법 하에서 범죄피해자는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회복적 사법과 전통적 사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 사법을 회복적 사법으로 대체하려는 입장, 회복적 사법의 우위를 인정하려는 입장 등도 있지만,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경향은 회복적 사법을 통해 전통적 사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법무부의 소년법개정안 제25조의2는 화해명령이라는 제목하에, “소년부판사는 소년에 대하여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명할 수 있다(제1항). 소년부판사는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 결정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소년보호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행하는 형사화해·조정은 회복적 사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행하는 형사화해·조정에 대해서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즉, 형사화해·조정은 검사의 사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형사화해·조정의 담당자는 제3자적인 공정한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나 검찰에 우호적일

13) 회복적 사법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이진국/도중진/오영근/김성돈/김용세/박광섭/원혜욱,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해소 전략 -갈등해소의 수단으로서 회복적 사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박광섭/김성돈, 각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운용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김은경,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김용세/류병관,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베르트 디터 마이어/김희균(역), “독일의 회복적 사법 제도: 법 규정과 도입성과의 개관”,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양문승, “매맞는 여성신드롬(BWS)의 피해자화이론과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3; 송광하,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 일본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및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법무공무원연구논문집, 제1집 제2호, 법무연수원, 2005; 김혜정, “범죄피해자보호의 영역에서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의미에 관한 고찰 :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조, 제55권 제4호, 2006; 도중진,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의 실천방안 -형사화해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이호중, “소년 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 경찰의 전문가 참여제와 회복적 공동체 사법”,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04; 원혜욱,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피해자학연구, 14권 제1호, 2006.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화해 · 조정의 담당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지원센터에서 행해지는 형사화해 · 조정이 범죄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절차선택권이나 형성권을 부여하여 형사절차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당사자간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성과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소년법개정시 또는 현행 형법하에서 형사화해 · 조정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비관론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형사화해 · 조정¹⁴⁾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5.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지위의 강화

2007. 6. 1일 개정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도(제165조의2), 피해자 통지제도(제259조의2), 피해자의 기록 열람 · 등사제도(제294조의4) 등을 도입하였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하고(제294조의2, 제294조의3), 재정신청의 범위도 넓혔다(260조).¹⁵⁾

그러나 개정형사소송법도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사소(私訴)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지만, 사소제도가 도

14) 형사화해 ·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장원경, “외국의 회복적 정의 개념에 기초한 미국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조정제도”,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349면 이하; 이진국, 가해자 - 피해자 - 조정: 범죄대처의 새로운 가능성과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기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이호중, “피해자-범죄자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외법논집, 제13집, 2002, 273면 이하; 김성돈,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2001, 153면 이하.

15) 예를 들어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의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진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때’를 진술배제요건에서 삭제하여 진술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2007, 152면 이하.

입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형집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현재와 같은 공적 형벌제도가 성립되게 된 역사적 경험을 무시할 위험성이 있다.¹⁶⁾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은 수사, 재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는 것이다.¹⁷⁾ 이런 의미에서 개정형사소송법상의 범죄피해자 공판정진술권 규정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면서도 범죄피해자가 진술할 때에는 여전히 증인신문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했을 것이다.¹⁸⁾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강화와 함께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¹⁹⁾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는 범죄피해자의 공판정진술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검사나 피고인측의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신문으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유럽의 경우 중세봉건제도 이전에는 범죄사건의 처리를 당사자에게 맡겨놓았다. 이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에게 자기가 받은 해악과 같거나 좀더 많은 해악을 가함으로써 복수하고, 이러한 사적인 복수가 한 가족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수년이고 지속되는 혈투(blood feuds)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공적 기관이 개입하는 형사사법제도가 형성되게 되었다. Harry Elmer Barnes, *The Story of Punishment*, 2nd ed., revised, Patterson Smith, Montclair, N.J., 1972, 7-10면; George B. Vold/Thomas J. Bernard, *Theoretical Criminology*,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7면.

17) 한 예로 일본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도 구형권을 인정하는 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18)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하에서도 범죄피해자가 탄원서의 형식으로 사실상 자신의 의견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를 위해서는 탄원서라는 비공식적 방법보다는 진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19) 이에 대해서는, 김성돈,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2, 123면 이하;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2006, 243면 이하.

6.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 빈곤층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국가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와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라고 한다면 후자는 질서유지 내지 범죄방지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는 국민에게 배상의무를 진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관철하게 되면 국가의 모든 재정을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범죄피해자들에게만 국가가 최소한의 배상 내지 보상을 하는 것이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이다.²⁰⁾ 현실적으로 국가가 범죄피해자들의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범죄의 발생이란 국가의 의무해태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는 능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1988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처음 시행되던 때의 범죄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유족구조금이 500만원이었다가(시행령 제12조), 1991년에는 시행령개정을 통해 1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 3년만의 개정도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16년동안 유족구조금은 1천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렇다고 하여 그 사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른 구조제도가 생긴 것도 없다. 화폐가치만으로 보아도 현재의 구조금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

20)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논의로, 김용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02; 오경식,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한 연구”, 경기법학논총, 창간호, 2000; 전광석, “사회보상의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 : 국가유공자보상, 집종피해보상, 의사상자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2001; 송인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본질적 특성과 보호입법의 범위”, 충남대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1999; 송광섭,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의 현황과 범죄피해자보호의 새로운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1997; 박광섭, “한·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충남대 법학연구, 제4권 제1호, 1993.

따라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인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구조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법무부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벌과금이나 몰수금 및 추징금 등의 일부를 범죄피해자 구조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생각된다.²¹⁾

IV. 결 어

범죄피해자들은 평생동안 범죄의 고통으로 시달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국가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한 구조금 몇 푼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보호법이 프로그램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질게 가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노력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열거해 놓은 많은 계획들은 마땅히 제도화,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과제들 중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세 가지를 제시한다면, 첫째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둘째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증액 및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조성이고, 셋째는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수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속하게 설립된 것은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의 위헌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율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을 하도록 육성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단순히 검찰의 외곽조

21) 과거 사범시설등조성법과 사범시설등특별회계법(두 법률 모두 지금은 폐지됨)에 의해 벌과금, 몰수금의 일부를 사범시설과 법무시설의 조성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처럼, 벌과금, 몰수금, 추징금 등의 일부를 범죄피해자구조기금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에 머무른다면 모처럼 일었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열기가 용두사미식으로 식어버릴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활동은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가가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의지를 예산확보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책정된 경상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형사사법제도의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범죄의 예방다시 말해 잠재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대규모라면 범죄발생 후의 원상회복 즉 현실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도 상당액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의 액수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벌과금, 몰수금, 추징금의 일정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배정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들을 발굴해내고, 교육하고, 일정한 순서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들 자원봉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경래, “민간 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 권문택, “형의 양정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고시계, 1996년 4월호.
- 김경석,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 한양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성돈,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2

- _____,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2001
- 김용세/류병관,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김용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02.
- 김은경,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김지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김혜정, “범죄피해자보호의 영역에서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의미에 관한 고찰 :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조, 제55권 제4호, 2006
- 도미타 노부호/강경래(역), “민간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 일본에 있어서 경찰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 도중진,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형사화해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박광섭, “한·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충남대 법학연구, 제4권 제1호, 1993.
- 박광섭/김성돈, 각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운용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2007.
- 베른트 디터 마이어/김희균(역), “독일의 회복적 사법 제도: 법 규정과 도입성과의 개관”,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 송광섭,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의 현황과 범죄피해자보호의 새로운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1997
- 송광하,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 일본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및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법무공무원연구논문집, 제1집 제2호, 법무연수원, 2005.
- 송인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본질적 특성과 보호입법의 범위”, 충남

대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0

양문승, “매맞는 여성신드롬(BWS)의 피해자화이론과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3.

오경식,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한 연구”, 경기법학논총, 창간호, 2000.

원혜욱,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피해자학연구, 14권 제1호, 2006.

이진국/도중진/오영근/김성돈/김용세/박광섭/원혜욱,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해소 전략 -갈등해소의 수단으로서 회복적 사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이진국, 가해자 - 피해자 - 조정: 범죄대처의 새로운 가능성과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기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 경찰의 전문가 참여제와 회복적 공동체사법”,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04.

_____, “피해자-범죄자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외법논집, 제13집, 2002

_____,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2006

장원경, “외국의 회복적 정의 개념에 기초한 미국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조정제도”,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전광석, “사회보상의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 : 국가유공자보상, 접종피해보상, 의사상자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2001.

최영승,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1999.

Barnes, Harry Elmer, The Story of Punishment, 2nd ed., revised, Patterson Smith, Montclair, N.J., 1972.

Vold, George B./Thomas J. Bernard, Theoretical Criminology,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Some Urgent Task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Act 2005

Oh, Young-Keun*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Outline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and the
Basic Plans fo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2006

1.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2. The Basic Plan fo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2006

III. Some Urgent Tasks

1. The Problem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 Basic
Plans

2. Activating the Crime Victim Centers
3. Introducing the Restorative Justice
4.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the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5. Increasing the Amount of the Crime Victim Aid Money
6. Developing the Program for the Volunteers

IV. Conclusion

In Korea,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the crime victims have emerged with the establishments of 55 Crime Victim Centers since 3-4 years before. This concern have got result of the legislation of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and the Basic Plans fo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2006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and the Basic Plan fo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2006, are included many plans and measures

* Professor, College of Law Hanyang University, Ph.D. in Law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However, Almost all the provisions and the clauses are of programmatic nature. So it is important so called 'choice and concentration'.

In this paper are suggested some urgent tasks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Victim Protection Act 2005. These tasks are as follows;

First, the rapid establishment of 55 Crime Victim Centers are very unique in Korea. So it is important to lead these centers to the right way. The succes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ivities in Korea will probably depend on the success of the Crime Victim Center.

Second, Korea has legislated and enforced the Crime Victim Aid Act since 1987, the amount of money provided with crime victim, however, is too small. So it is very urgent to increase the amount of money and to make a national fund for the crime victim aid.

Third,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programmes and guides for the volunteers, how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주제어 :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범죄피해자구조,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회복적 사법

Keywords : day fine system, principle of equal sacrifice, unit scale, valuing fine units